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정 2025년 7월 1일 규칙 제984호

제1조(「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선정대리인 신청·지정)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선정대리인 지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4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내역(별지 제47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제4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오 산 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오산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오산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오산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오산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관인생략

